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06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6. 17.

판결 선고2015. 7.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958,070원 및 그 중 100,609,324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 1) 원고는 2013. 6. 13.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8. 6.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2012. 12. 1.부터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이다.
- 4) 피고 A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13.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피고 A이 2013. 10. 23. 위 C주유소를 폐업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원고는 2014. 4.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국민은행에 100,609,324원을 변제하였다.
- 3)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1,579,20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후 230,454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3. 10. 21.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재산관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0. 18. 무렵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520,650,9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기계 7식(피고 A은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0. 18. 매도하였다) 합계 600,650,9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2013. 10. 18. 무렵 피고 A은 소극재산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124,106,281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18,443,27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4,000만 원, D에 대한 차용금채무 5억 3,000만 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3,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만 원 및 국세체납액 4,125,040원 합계 756,674,591원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결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01,958,070원(= 대위변제금 100,609,324원+법적 절차비용 1,348,746원(=지급금 1,579,200원 - 회수금 230,45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609,3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12. 16.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피고 A이 자신의 사업장인 C주유소를 폐업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 A의 재산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2)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그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3)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관계, 피고 A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함께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채,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3,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만의 대물변제로 양수받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4. 7. 24.부터 대전 서구 F, 303호에 주소를 같이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 B이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4. 1.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 B이 2014. 1. 11.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4,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8,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정교형

판사박지숙

별지